

대전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6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D

피 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증여계약을 19,557,0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57,0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차전17041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16. 'F은 원고에게 20,401,991원과 이중 5,1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8%, 185,98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5, 7,61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6,656,107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은 1990. 2. 21.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9. 7.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F은 2019. 7.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9. 7. 5. 접수 제311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F은 G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012. 8. 6. 채권최고액을 23,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3. 1. 17.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9. 7. 17. G은행에 83,555,517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무 외에도 G은행, H은행, I은행, J카드, K카드, L카드, M, 원고 등에 대하여 합계 약 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7.경 시가는 192,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피고와 F의 협의이혼은 F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진정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F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F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위장이혼인지 여부

원고는 F의 이혼 후 주소와 피고의 주소인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동일하므로 피고와 F이 위장이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피고의 주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F이 위장으로 이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산분할 해당 여부 및 분할의 상당성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F이 협의이혼신고를 하기 2주일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와 F은 약 29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고, 피고는 그 형식적인 등기 원인과 관계없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와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F과 약 29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92,500,000원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F의 채무 83,555,517원을 제외한 피고의 순 이득액은 약 1억원에 그치는 점, ③ F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협의이혼 직전에 퇴직일시금으로 66,662,3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퇴직연금으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F은 혼인기간 중 주식이나 도박에 빠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가 F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한 F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면 적 : 1 층 호 84.94㎡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 4734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7349 분의 49,371



